건물 증축 취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Q 당사의 건물 중 1개 층을 복층으로 증축 공사 진행 중입니다.

1. 건물의 연면적이 증가하면 취득세 납부 하는것이 맞는지요?
2. 복층으로 증축 공사 한 면적에 추후 크린룸 공사 예정인데 크린룸 공사 완료 시 자본적지출로 추가 예정입니다.

자본적지출 추가 시 건물가액 증가로 인해 취득세 납부 하는 것이 맞는지요?

A

1. 건축법에 따른 개수(대수선)도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대상인데, 귀사가 실시하는 증축은 이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2. 크린룸 공사비용이 건축물의 자본적지출인지 아니면 별도의 시설물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도 관할 지자체에서 구체적 사실판단후 결정될 사항입니다.

식대 직원공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Q 회사에서 중식을 제공할때(특정 지역 파견근무 시 도시락 등을 정기적으로 시켜먹을때도 동일함) 2,500원씩 직원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급여 지급시 공제)

이럴 경우에 직원이 부담하는 2,500원에 대해서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본사에서는 급식업체와 연간 계약이 되어 있다보니 직원부담금액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수취분에 대해서는 매입불공제 처리하고 있음)

Q. 파견근무자들이 시켜먹는 도시락에 대해서도 직원이 부담하는 2,5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해당 급식업체의 매출누락이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직원의 개인부담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는지

A 공동매입의 경우 대표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수취할 수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회사가 직원들을 대표하여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직원이 부담한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초보자코너

매출과 세금계산서 발생 불 일치 시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Q 1기예정신고시에 매출은 발생 했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이 5월에 되어서 1기 예정신고시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하여 그만큼 기타매출로 잡아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1기 확정시에 따라서 매출은 없으나 (기 발생되어 2,3월에 예정분에 신고함) 세금 계산서 금액이 않은데 이는 어떻게 신고 해야할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기타 매출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국세청 신고시에 기타 매출에서 마이너스를 넣을 수 없게 되어 있네요.

A 기타매출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매출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5월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1기확정시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시고 예정신고분에서 기타매출분을 제외하는 수정신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매출 영세율 기타 부가세 신고 문의

Q 매출 영세율 중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1. 용역 매출 (인보이스) 2. 직수출 (필증) 이 있는 경우,

1. 용역 매출(인보이스)는 매출부가세의 영세율 기타에 기입되며, 영세율 첨부서류에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첨부하고, 수출실적 명세서의 아래 리스트는 하지 않으나 기타 영세율 적용란에 기입되어야 하나요?
2. 이전의 용역매출(인보이스)를 영세율 첨부서류와 인보이스만 제출하고 수출실적명세서를 누락했다면 이전 것도 수정신고 진행 해야 하나요? 패널티가 있나요?
3. 매출 부가세의 영세율 기타 (세금계산서발급분X) 에 기입되는 항목은 직수출 (필증) , 용역매출(인보이스) 가 있을때, 두항목 모두 영세율 첨부서류 와 수출실적 명세서가 작성되어야 하는건가요? 필증이 있을 경우는 영세율 첨부서류 시 추가로 낼 증빙은 없는건가요? 현재 용역매출은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A 국외에서의 용역매출은 용역공급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이며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도 영세율 첨부서류 중 하나로 직수출시에 작성하시면 되며, 용역매출시에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